광안 경동 LEEIN 입주자모집공고

광안 경동리인 입주자 모집공고(정정공고)

※2020.07.17(금) 일자로 리더스경제 신문사에 공고한 '광안경동리인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존	변경
2020.07.17(금)	2020.07.21(화)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광안 경동리인은 방문 관람과 사이버 견본주택을(www.광안경동리인.com)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제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시간당 한정된 일정 인원 방문관람 및 체험시간 제한)
- 신청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광안경동리인 검색후 홈페이지 방문예약 접수 및 신청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광안경동리인.com)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사전서류접수 기간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이외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당첨자 및 계약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에 한하여 입장 가능)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양화상가에리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당 견본주택 입구 설치 예정)
- 입장시 손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등)에 불응할 경우.

※광안 경동리인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661-0511)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고객님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이러한 사소한 착오가 최고 지로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21일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지역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1.)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9-30호]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오니 청약접수 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자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고시」제2019-30호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19.07.2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한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7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 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시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시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시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손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0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0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1.)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9-30호]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오니 청약접수 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자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고시」제2019-30호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19.07.2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한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7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 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시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시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시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전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손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0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0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66조,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 (1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내,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계약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에 의거 '소형 주거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취득세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소형 주거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3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시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시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유상은 상기 공급금액에 미포함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추후 계약자가 선택하여 별도 계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일시 불출일자로써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주택금액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먼혜로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이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시행사 및 시공사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증권을 받을 수 없으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업계획기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시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시장에 경과 당첨시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제출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시장지역 등 판단시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분양대행사가 대행합니다.
- 최하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있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지정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해당 층의 비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3A	53B	56	72	73A	73B	75	76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	-	-	-	-	1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1	-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	-	-	-	-	1	-	-	1
	장애인		1	1	-	2	-	-	1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	1	2	1	-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	3	3	-	4	3	3	-	19
		일반공급(25%)	1	1	1	-	1	1	1	-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	1	1	-	-	2
합계			5	5	5	-	9	9	7	-	40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을 포함한다.함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가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하며, 기관별 순위 선정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 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자(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시업운용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시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공급받아 전매 제한기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시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시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을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더라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되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기준으로 자격 유무에 따라 순위대를 구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기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입양 중이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한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시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부부 및 입양·친자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입주부부의 입양신청자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자녀는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를 입증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내용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않아야 하며, 부부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합 모두 소득이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 130%이하)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N → 9인 이상 가구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지난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기본급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표준금액에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신청 (단 임신 순산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명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은 자를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한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추첨통장 가입은행 별로 구분 없이 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 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가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으로 결정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인경우에 추첨제 공급 시 우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요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한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급한 총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임신2주 이상자가 경쟁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산광역시 1년 이만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이경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이하의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해당무택지 7일제가구인 경우 지역거분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해당무택지 7일제 지역인 경우 지역구분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이 동 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 방가의 방법을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 (동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 또는 계약해약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발표 시점에 발표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59C(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인천, 경기)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_제23조제4항 및 제3조조

- 검색제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아닌 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분양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의 경우 :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공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의 확인서 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판정하는 주요 사항 : 사용 : 사용승인 준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을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판결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한)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자체수요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 체결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개 이상의 주택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자 제외)
  - 가정해체 부양가족의 인정여부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이 동 호수 기준 공공주택 등 공공기관 등에 의하여 멸실되었거나 실제 사용되는 것은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 건축법 입법기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 저가주택등을 또는 1세대가 2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주택의 가격이 해당 시점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한다.
  10. 제7조제1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주택을 선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한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별로 구분 없이 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 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가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으로 결정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인경우에 추첨제 공급 시 우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요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임신2주 이상자가 경쟁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산광역시 1년 이만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이경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이하의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해당무택지 7일제가구인 경우 지역구분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해당무택지 7일제 지역인 경우 지역구분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이 동 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 방가의 방법을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 (동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 또는 계약해약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발표 시점에 발표됩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59C(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인천, 경기) 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_제23조제4항 및 제3조

- 검색제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아닌 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분양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의 경우 :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공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의 확인서 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판정하는 주요 사항 : 사용 : 사용승인 준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을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판결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한)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자체수요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 체결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개 이상의 주택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자 제외)
  - 가정해체 부양가족의 인정여부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이 동 호수 기준 공공주택 등 공공기관 등에 의하여 멸실되었거나 실제 사용되는 것은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 건축법 입법기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 저가주택등을 또는 1세대가 2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주택의 가격이 해당 시점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한다.
  10. 제7조제1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주택을 선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한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별로 구분 없이 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 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가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으로 결정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인경우에 추첨제 공급 시 우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요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임신2주 이상자가 경쟁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산광역시 1년 이만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이경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이하의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해당무택지 7일제가구인 경우 지역구분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해당무택지 7일제 지역인 경우 지역구분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이 동 호수 기준 공공주택 등 공공기관 등에 의하여 멸실되었거나 실제 사용되는 것은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 건축법 입법기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 저가주택등을 또는 1세대가 2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주택의 가격이 해당 시점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한다.
  10. 제7조제1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주택을 선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 또는(청은 청형)으로 기재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으로 기재하오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지하시기바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련하여 입주자와 관련없이 지정공부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중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장지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이 도시가스 공급 천지역 변전소 인접 지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각종 공고 및 홈페이지 X, 홈페이지팩스, 전단, 안내문 등(이하 각종 공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및 안내 과정에서 사정 관련정책등의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각종 공고 및 홈페이지 등,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에 타 각종 공고 및 홈페이 등을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 사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 발생하지 않음.
- 각종 공고 및 홈페이지 등, 홍보물, 조감도 등 기재되었던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모델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을 위주로 간결한 표현 및 기재 하였으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하지 않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비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본 카탈로그, 홍보물(전단, 안내문 등)에 하 각종 공고 및 홈페이지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시무실에 비치된 입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건물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사진에 사업부지 내 외현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지정 공시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리 일체의 입주자 대표회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갈개변경이 주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작한한 세대 내 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진행될 수 있음.
- "건축법」제62조에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건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변경 인정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심의 및 등은 관련 법령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이간경량용 조명, 위상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설비,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건물 내부(사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것임)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기 등 제품의 성능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실은 추후 별도로 운영될(예정)되며 입주 후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주거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구성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대수 만큼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 그림을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을 모아 경쟁하는 장소 등 조명의 밝기는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 내부 옥외시설은 항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등의 입주자 등의 입주자 등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내부 및 지하층의 복도 및 계단 벽체 및 천장 마감재 등은 콘크리트 위에 페인트 마감 또는 벽돌 및 타일 등 일부 마감이 생략되거나 일부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내 전산장비 및 기계 장비 등 설치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외부 시설물 등은 사업 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관리 편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차 충전 수요 발생 시 설치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는 높이는 주행로 법의 높이 2300mm이상 시공될 예정이며 출입구 폭은 주차 수 목적의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및 사업주체 간 협의 결과 해당 사항 이외의 요구 사항은 수용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 내 외부 및 주변 시설물 등은 사업주체 시공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및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 내 외부 및 주변 시설물 등은 사업주체 시공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및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단지 및 건물 신축 중 인한 건축물의 음영 및 마감재 등에 의한 빛 반사 등 주변 환경 및 조망